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국유특허권 등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특허권을 무상으로 처분하여 처분수입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업무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특허청장이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 등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을 앞으로는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16. ~ 4.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심판·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제1항 중 “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로 한다.

제8조의 제목“(발명자의 출원)”을“(발명자의 출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특허출원을 할”을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출원을 한”을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를 “50만원의 범위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포상금”을 “금액의 범위에서 처분 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관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17.5에 해당하는”을 “100분의 17.5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분 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으로”를 “금액의 범위에서 국유실용신안권과 국유디자인권의 활용가치, 실용신안의 고안과 디자인의 창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무발명 또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의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특허권·국유실용신안권·국유디자인권(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외국에 출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

제16조(등록보상금) ① -----  
----- 50만원의 범위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처분보상금) ① -----  
-----  
-----  
-----  
--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



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기관포상금 등)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삭 제>

제18조(기관포상금 등) ① -----  
-----  
-----  
-----  
-----  
-----  
----- 금액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관포상금-----

--.

1. ~ 3. (생략)

②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략)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 ④ (생략)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 ②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100  
분의 17.5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  
-----.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2. (생략)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에 따

(현행과 같음)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분 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금액의 범위에서 국유 실용신안권과 국유디자인권의 활용가치, 실용신안의 고안과 디자인의 창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

1. 2.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8498